

예산총칙

2019년도 최종추경 이후 통합간주 1 차 ~ 4 차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1,676,941	15,350,308
일반회계	488,339,007	14,650,170
특별회계	23,337,934	700,138
기타특별회계	23,337,934	700,13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3,260	19,598
주차장 특별회계	13,034,265	391,02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005,266	30,158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600,443	48,013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57,838	10,735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6,686,862	200,6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361,714천원(일반예비비 3,345,061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016,65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9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서 자원표기

- [국] 국고보조금, [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 금
-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재원